



제20169호 2022-01-14

【총 리 령】

- 총리령제1780호(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4

【부 령】

- 국토교통부령제938호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7
- 국토교통부령제939호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8

【고 시】

- 경찰청고시제2022-1호(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) 18
- 광주출입국.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-0004호(국적상실) 19
- 광주출입국.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-0005호(국적(재)취득) 20
- 교육부고시제2022-4호(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) 21
-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-0004호(한국산업표준 제정) 48
-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-2호(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) 49
-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-03호(한국산업표준(KS) 제정 예고) 54
- 국토교통부고시제2022-4호(사업인정) 55
- 국토교통부고시제2022-5호(사업인정) 56
-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-4호(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(신설,폐지) 알림) 59
-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-1호(하천수의 사용허가) 60
-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-2호(하천수의 사용허가) 61
-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-4호(하천수사용허가) 62
-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-002호(하천수 사용허가) 63
-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-3호(항로표지 폐지 알림) 66
-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-6호(항로표지 고시) 67
- 법무부고시제2022-10호(국적상실 정정) 68
-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-1호(우편취급국(설치장소 이전)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) 69
-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-8호(사설항로표지 신설(부산항신항송도디엘등부표)) 70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-10호(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) 71
-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-5호(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[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(2022)]) 83
-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-6호(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(공사청사 주차장 진입로 개선)) 84
-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-7호(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(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)) 85
-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-8호(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(김포공항 이동지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)) 86

●경찰청고시 제2022-1호

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

「도로교통법」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「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」(경찰청 고시 제2022-1호, 2022. 1. 14)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14일

경찰청장

1. 시행구간

가. 평일

-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.4km(오산IC)부터 416.1km(양재IC)까지 총연장 39.7km

나. 토요일, 공휴일, 설날·추석연휴(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) 및 연휴 전날

※ 공휴일 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에 따른 공휴일(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)로 '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'은 제외(이하 같음)

-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.0km(신탄진IC)부터 416.1km(양재IC)까지 총연장 134.1km

- 영동고속도로 인천·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.6km(신갈Jct)부터 70.5km(호법Jct)까지 총연장 26.9km

2. 시행시간

가. 평일, 토요일·공휴일

- 경부고속도로 : 서울·부산 양방향 07:00부터 21:00까지

- 영동고속도로 : 인천·강릉 양방향 07:00부터 21:00까지(단, 평일 제외)

나. 설날·추석연휴(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) 및 연휴 전날

- 경부고속도로 : 서울·부산 양방향 07:00부터 다음날 01:00까지

- 영동고속도로 : 인천·강릉 양방향 07:00부터 다음날 01:00까지

3. 통행가능차량

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(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)

4. 재검토기한

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94호)에 따라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